

1. 개정이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공소청법」이 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입국사범에 대한 사건부, 고발서 및 통고서에 기재된 기관 명칭을 변경된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출입국사범에 대한 사건부 작성 서식 중 고발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함(안 별지 제86호의2 서식)
- 나. 출입국사범에 대한 고발서 작성 서식 중 수신기관의 “OO 지방검찰청 검사장(OO 지청장)” 삭제(안 별지 제140호 서식)
- 다.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서 작성 서식의 통고내용 중 “관할 검찰청 (with the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을 삭제(안 별지 제141호 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6호의2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140호서식 중 “: ○○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을 “.”로 한다.

별지 제141호서식 중 “관할 검찰청에 고발합니다”를 “고발합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 중 “filed with the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를 “filed”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건 부

사건		제		호	
접수		년		월 일	
구분		인지 또는		로부터 인수	
담당		직급		성명	

용의자	국적		성별	
	성명		체류자격	
	생년월일		연락처	
	주거(소)			

죄명		출입국관리법 제 조 항 위반			
----	--	-----------------	--	--	--

처분	보호	명령서발부 :		년 월 일		보호기간 :		년 월 일까지	
		보호장소 :				보호기간연장 :		년 월 일까지	
		보호통지 :		년 월 일		강제퇴거를 위한보호 :		년 월 일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		년 월 일		보호해제 :		년 월 일	
	강제퇴거	명령서발부 :		년 월 일		이의신청 :		년 월 일	
		집행 :		년 월 일		송환국 :			
	출국명령	명령서발부 :		년 월 일		출국기한 :		년 월 일까지	
		출국일자 :		년 월 일		출국항 :			
	출국권고	권고서발부 :		년 월 일		출국권고기한 :		년 월 일	
		출국일자 :		년 월 일		출국항 :			
	통고처분	통고서발부 :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통고금액 :		만원		납부일자 :		년 월 일	
		처분 후 조치 : 체류기간 연장, 체류지 변경,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부여,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자격 외 활동, 기타							
	과태료	통지서발부 :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부과금액 :		만원		납부일자 :		년 월 일	
	고발	일자 :		년 월 일		사유 :		직고발, 불이행	
		송치관서 :		공소청(지청)		결과 :			
	타관이송	년 월 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외국인보호소					
	기타	년 월 일		통고처분 면제, 무혐의, 소재불명으로 사건종결					

제출물	제출물 :		제출일자 :		년 월 일	
	환부물 :		환부일자 :		년 월 일	

행정제재	입국금지(사증규제) :		년	
------	--------------	--	---	--

비고	입국일자 :		년 월 일	
	불법체류기간 :		년 월 일	
	동반가족 :		명	
	출국선박 등 :		편	

출입국사범 고발서

문서번호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과

수 신 :

대상자	성명(법인명 또는 사업자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성별 남[] 여[]
	직업(직장명)	연락처
	국적	여권번호
	한국 내 주소(법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고발내용	죄명	
	적용법조	
	증거품	
참고사항		
붙임서류	1. 의견서 2. 3.	

「출입국관리법」 제101조에 따라 위의 사건을 고발합니다.

년 월 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직인

통 고 서 (WRITTEN NOTIFICATION)

수신 :
 To

인적사항 (Person to whom the Notification relates)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성별 (Sex) 남 Male[] 여 Female[]	
	직업 (Occupation)	연락처 (Phone No.)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위반사실 (Offense charged)			
적용 법조문 (Applicable provision)			
범칙금액 (Monetary penalty)	원 (₩)		
납부기한 (Deadline for penalty)	0000. 00. 00. 까지	납부장소 (Place of payment)	국고수납기관 (National fund receipt agency)

위 사람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용의사건을 조사한바, 용의자는 「출입국관리법」 제__조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위 범칙금액을 위 납부기한까지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할 것을 통고합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05조에 따라 고발합니다.

Based on the results of our investigation into the alleged violation of the Immigration Act, as well as the statements made by the abovementioned person and persons concerned, the abovementioned person is found to have violated Article____of the Immigration Act. It is hereby notified that the person is required to pay the amount of penalty to the national fund receipt agency no later than the deadline as specified abo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of the Immigration Act.

Failure to pay the penalty within the deadline will result in a complaint being fil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5 of the Immigration Act.

년 월 일
 Date (year) (month) (day)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CHIEF, ○○IMMIGRATION OFFICE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지 제86호의2서식, 제140호서식, 제141조서식] 개정사항으로 조문
변동사항 없음